

-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

발 의 자 : 김홍운 의원외 6인

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5년 12월 6일
-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9일

제안 이유

- 각급 행정기관이 인터넷 시스템상에서 운영되는 민원창구 명칭을 '전자민원 창구'로 일원화 하고 있는데도 현행 조례는 '사이버 민원실'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- 조례명 등은 「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」에 맞도록 정비하고,
- “사이버 민원실”을 “전자민원 창구”로 변경함.

(안 제3조 제2항,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)

※ 행정자치부가 2003. 7. 22. 제정한 「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」

에는 인터넷상 민원창구를 “전자민원창구”로 일원화하고 있어 민원인의 혼동 방지.

□ 검토 의견

○본 개정조례안은

인터넷 시스템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창구 명칭이 행정자치부 ‘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’에 전자민원 창구로 일원화 되어있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